

산업체위탁교육 운영 규정

개정 2019.04.17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혜전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이 운영하는 산업체 위탁교육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범위)

산업체 위탁교육에 있어 산업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국가, 지방자치 단체 및 공공단체
- ②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, 방송국 등
- ③ 교육법상 등록된 학교
- ④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(시설강습소)
- ⑤ 의료기관
- ⑥ 상시 5인 이상 고용 산업체(근로기준법 제10조)
- ⑦ 군무원 및 직업군인으로 부서관 이상
- ⑧ 상시 근로자 5인 이하의 산업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, 공공단체 등에 등록된 단체나 조합에 구성원으로 가입되어 있을 경우 그 단체나 조합명의로 지원이 가능함.
- ⑨ 기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

제3조 (위탁교육의 성립)

산업체 위탁교육에 필요한 제 요건이 구비된 산업체가 본교에 위탁을 의뢰할 경우 위탁 교육계약서(별지서식 제1호)에 의하여 성립한다.

제4조 (위탁 학생 수 및 학급편성)

본교 계열(학과)별 입학정원의 100% 범위 내에서 선발하되 위탁교육은 15명 이상 40명단위의 별도 학급으로 편성,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, 등록인원 감소로 별도학급 편성이 곤란할 경우에는 당해 모집(주, 야간 각각 산정)입학정원의 10% 범위 내에서 혼합 편성할 수 있다.<개정 2013.10.7.>

제5조 (설치학과)

본교에 설치된 계열(학과)에 따른다.

제6조 (교육과정 및 운영)

위탁생으로 편성된 별도학급에 대한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본교의 당해학과의 교육과정에 따른다. 단, 위탁산업체와 협의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할 수 있다.

제7조 (위탁생의 선발)

- ① 위탁생의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 산업체에서 9개월 이상

근무 중인 자로 한다.(산업체 부설 고등학교, 야간 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에 대해서는 재학기간과 산업체 근무기간이 중복되는 경우라도 그 기간을 산업체 근무기간으로 본다.)<개정 2013.10.7.>

- ② 위탁생은 당해 산업체에서 추천하여 본교에서 별도로 정한 전형절차를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.

제8조 (수업년한)

- ① 수업년한은 2년(4학기) 또는 3년(6학기)로 할 수 있다.
 ② 제8조의 2(학사관리) ②항으로 옮김
 ③ 제8조의 2(학사관리) ③항으로 옮김

제8조 2 (학사관리)<신설 2013.10.7.>

- ① 산업체위탁교육생은 본교 재학생과 동일한 학칙을 적용받는다.
 ② 산업체위탁교육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산업체를 퇴직할 경우에는 제적 처리한다.
 단, 산업체의 도산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할 경우와 타 산업체로 전직한 경우에는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.
 ③ 산업체위탁교육생이 제적된 경우에는 재입학 할 수 없다.
 ④ 산업체위탁교육생은 1년 1회(매년 9월) 재직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증빙서류는 4대 보험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서류만 인정한다.

제9조 (교과목 이수)

위탁생의 교과목 이수는 해당 계열(학과)의 교육과정표를 따르며 다음 각 호의 교과목에 대하여는 당해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받아 해당 학점을 인정 할 수 있다.<개정 2013.10.7.>

- ① 공인된 직업교육기관에서의 동일분야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
 ② 산업체내 연구소 및 사내훈련기관에 의한 전공분야 교과목의 이수(본교 부설 특별과정 및 사회교육원 과정 포함)
 ③ 기능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전공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 이수
 ④ 동일분야의 기사 2급 이상 국가기술 자격취득자의 해당시험 과목
 ⑤ 동일직무에 일정기간 근무경력의 실험, 실습 관련 교과목

제10조 (위탁교육경비 납부)

- ① 위탁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는 위탁 산업체의 책임 하에 본교 등록금 납부기간에 일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② 총장은 위탁생의 납입금은 당해 계열(학과)의 등록금을 기준으로 하며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요원 활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.

제11조 (본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)<개정 2013.10.7.>

- ① 위탁교육 산업체와 본교는 산학협동 교육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호

협동하여야 한다.

1. 교육과정 및 교재의 공동개발
 2. 산업체가 필요한 기술개발 과제의 발굴과 교수에 의한 위탁연구 또는 산업체 임직원이나 연구원과의 공동연구
 3. 교육용 실험실습 시설의 공동개발 및 교육용 기자재 기증
 4. 정규과정 학생의 현장실습 및 취업의 추진
 5. 학생생활 지도 및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한 협력
- ②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
1. 산업체 내에 강의실 또는 실험실습 시설이 가능한 경우는 위탁생만으로 편성된 별도 학급의 강의 또는 실험실습교육을 산업현장에서 할 수 있다.
 2.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산업체 임직원 중 적격자를 본교의 심사를 거쳐 겸임교수 또는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.

제12조 (위탁교육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)

- ① 위탁교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교에 위탁교육심의위원회를 둔다.
- ②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산업체 임직원 및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인원이 1/2이상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1. 위탁의뢰 산업체 적부에 관한 사항
 2. 위탁생의 선발기준
 3. 위탁교육 경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
 4. 위탁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5. 산업체의 시설 및 교육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에 관한 사항
 6. 본교와 산업체 상호지원에 관한 사항<개정 2013.10.7.>
 7. 기타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1994년 0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02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제3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02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제4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04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3년 10월 0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04.17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04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(별지서식 제1호)<개정 2019.04.17.>

위탁교육계약서

혜전대학교와 산업체는 고등교육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.

제1조 (목적)

이 계약의 목적은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혜전대학교에 위탁함에 따른 필요 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.

제2조 (위탁과정과 분야별 인원)

- ① 위탁교육과정은 교육법상의 전문대학 과정을 이수시키는 것으로 한다.
- ② 위탁의 분야별 위탁생수는 다음과 같다.

| 연도별 | 분야계열(학과) | 위탁생수 | 비 고 |
|-----|----------|------|-----|
| | | | |

제3조 (위탁생의 자격)

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중인 자로 한다.

제4조 (위탁생의 선발과 입학)

- ① 위탁의 대상자는 산업체에서 추천한다.
- ② 본교는 위탁생으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입학전형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.
- ③ 위탁생의 추천 및 입학전형 등 입학허가의 기준과 절차는 산업체 및 본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.

제5조 (위탁생의 학급편성)

이 약정에 의하여 별도의 학급편성 또는 본교의 기설치 계열(학과)의 학과에 위탁생을 흡수 편성할 수 있다.

제6조 (교육과정의 편성)

- ① 본 계약에 의거 위탁생을 별도 학급으로 편성할 경우 본교는 산업체와 공동으로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. 단, 본교의 학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.
- ② 별도 교육과정을 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표를 본 계약의 별표로 한다.
- ③ 별도 교육과정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교의 학칙에 따른다.

제7조 (산업체의 시설 이용)

위탁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산업체와 합의 하에 산업체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용시설의 목록, 사용방법을 작성하여 이 약정의 별표로 첨부한다.

제8조 (산업체 임직원의 교수요원 활용)

위탁 산업체 임직원 중 교수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산업체 겸임교수 또는 시간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.

제9조 (교육비 및 등록)

- ① 위탁생의 교육비 납부액은 본교의 학생 납입금 수준으로 하되, 산업체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.
- ② 위탁생의 교육비 납부는 위탁 산업체의 책임 하에 일괄 납부한다.

제10조 (위탁생의 신분)

본 약정에 의거 입학이 허가된 위탁생은 본교의 학생신분을 갖게 되며, 학칙의 적용을 받는다.

제11조 (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)

산업체는 학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. 특별한 지원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약정서에 별표로 작성하여 명시한다.

제12조 (위탁교육 협력위원회)

약정에 의거 협력위원회를 구성한다. 협력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기능을 규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 (경과조치)

본 계약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20

혜전대학교 총 장 ○ ○ ○ (인)

회 사 대표이사 ○ ○ ○ (인)